|  |  |  |
| --- | --- | --- |
|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  (2016년 3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5호로 공표)  제1장 총칙  제1조 유통분야의 상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공상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 포함)는 법률•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유통분야의 상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상품품질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  제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유통분야 상품품질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주요 방식으로 하는 감독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상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경영자의 상품품질 의무 이행을 독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황 통보, 정보 공유, 사건 이송, 감독관리 연동의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법 집행상의 협력을 강화하며 감독관리 및 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품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 공개성,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처벌과 교육 결합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하며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법정(法定)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독촉하여야 한다.  제2장 경영자의 상품품질 의무  제6조 판매자는 입고 검사•검수, 판매 중단 및 반품•교환 등 상품품질 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여야 하고 상품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와 이 방법의 규정 및 소비자에 대한 약속에 따라 상품품질 의무를 이행하고 상품품질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자는 입고 검사•검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입고 검사•검수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상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필요한 보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검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급업체의 주체 자격;  (2) 상품 합격증명 및 기타 표지;  (3) 법률•법규에 따라 생산허가증제도 또는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상품의 경우 그 허가증, 인증증서를 검사 및 확인한다.  제8조 판매하는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한 표지는 진실적이고 정확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상품품질 합격증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중국어로 된 상품명칭, 생산공장의 명칭 및 주소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상품의 특성과 사용요구에 근거하여 상품의 규격, 등급, 주요 성분, 함유량 및 소비자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기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용기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현저한 위치에 생산일자 및 안전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부적절한 사용 시 상품 자체의 파손 또는 신변•재산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명확한 경고표지 또는 중문으로 된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법률•법규 및 강제성 표준이 요구하는 기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가공한 상품을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상품 특성상 표지 부착이 어려운 무포장 상품의 경우 상품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판매하는 수입상품은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중문으로 된 상품명칭, 생산지 및 수입업체 또는 독점판매대리업체의 명칭 및 주소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과 관계되거나 특수한 사용•유지보수 요구가 있는 상품의 경우 중국어로 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용기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중문으로 사용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부품 또는 무포장 상태로 수입한 후 조립 또는 개별포장한 상품의 경우 상품 또는 포장에 조립공장 또는 개별포장공장의 명칭과 주소지를 중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  (2)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제품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 상품 설명•실물 견본 등 방식으로 명시한 품질 상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사용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품;  (3) 국가가 명문으로 탈락시켰거나 유통을 금지시킨 상품;  (4) 생산지를 조작한 상품, 타인의 공장 명칭과 주소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인증마크 등 품질 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5)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된 상품;  (6) 생산일자를 변조한 상품.  제11조 생산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물질•가짜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가짜품을 진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판매하는 상품에 사용성능상의 하자가 존재하나 법률의 강제성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포장 또는 매장의 현저한 위치에 '처리품', '불량품', '등외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게시문 등 방식으로 상품의 하자 또는 실제 품질 상황을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판매자는 공장명칭, 공장주소가 표시되지 아니한 상품 등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상품, 증정품 등 판매품으로 간주하는 상품도 이 방법 제8조~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서비스업 경영자는 이 방법 제10조, 제11조에 규정한 판매금지 상품을 경영성 서비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품질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규정,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반품, 교환, 수선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규정과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반품할 수 있다. 7일이 경과된 후에도 법정(法定) 계약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소비자는 적시에 반품할 수 있으며 법정(法定) 계약해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교환, 수선 등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관련 행정부서에 의해 불합격 상품으로 판정받은 경우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반품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판매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주문 등 방식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반품할 수 있다. 판매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무이유 반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판매자는 상품 수선•재제작•교환•반품, 상품 수량 보완, 상품대금•서비스요금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판매자는 그가 제공한 상품에 신변•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판매 중단, 경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영자는 해당 상품이 이 방법 제10조, 제11조에 규정한 판매금지 상품임을 알고 있거나 응당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위하여 운송, 보관, 저장 등 편리 조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상품경영매장 임대자, 상품 전시회 주최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 라디오•TV 쇼핑 플랫폼 경영자는 그 경영장소 또는 플랫폼 입점을 신청하는 경영자의 주체 자격에 대한 심사•등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품경영매장 임대자, 상품 전시회 주최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 디오•TV 쇼핑 플랫폼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판매 중단을 명하는 통보 또는 공고를 접한 후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을 위한 입점•경영 또는 플랫폼 서비스를 지체없이 중단시켜야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감독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상품품질 감독검사  제22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률•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과 임의추출검사 실시방안의 통일된 계획에 따라 법 집행 인력을 무작위로 선정 및 파견하여 임의추출한 관할구역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경영성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추출의 주요 내용에는 입고 검사•검수 제도 집행 상황, 상품의 품질검사합격증명•설명서•생산공장명칭/주소•경고표시 등 표지 표시 사황,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타 상품 정보 등을 포함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비자, 관련 조직, 대중매체가 반영하였거나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품질문제 상품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유통분야 상품품질 추출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추출검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빅 데이터 분석 등 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추출검사 중점사항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추출검사계획 및 실시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추출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추출검사는 법률, 법규, 강제성 표준 및 기타 관련 규정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된 상품 표준 또는 상품 설명, 실물 견본 등 방식으로 명시한 품질 상황에 근거하여 상품품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추출검사 결과는 지체없이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감독검사 직권에 의거하거나 신고, 제보, 기타 기관의 이송, 상급 기관의 업무지시 등 경로를 통해 상품품질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처리하며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사회에 공시한다.  제2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품품질 불법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처리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1) 당사자가 불법 활동에 이용한 장소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기타 관계자 및 관련 경영자를 통해 불법 활동 관련 상황을 조사 및 파악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입고대장, 판매대장, 재무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4)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 미달을 증명하는 근거가 있거나 기타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과 해당 상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원부자재, 포장물, 전용공구를 압류할 수 있다.  (5)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직권.  제26조 추출검사를 거쳐 법에 의거하여 불합격 상품으로 판정을 내린 경우 공상행정주관부서는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관할구역 내의 판매자에게 동일 상표, 동일 규격모델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하고 지체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단서를 공급업체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책임으로 인한 상품품질 불법행위의 경우 관련 단서를 생산자 소재지 관련 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장 감독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상품품질 안전 리스크 경보 및 소비 주의사항을 적시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정(法定) 직권 범위 내에서 경영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의, 면담, 시범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자의 적법화•규범화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제29조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0조 판매자가 이 방법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판매자가 이 방법 제10조 제(1)호~제(5)호,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10조 제(6)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판매자에게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중단을 명하고 불법 판매한 상품을 몰수하며 불법 판매한 상품(이미 판매한 상품과 아직 판매하지 못한 상품 포함) 가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제32조 판매자가 이 방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불법소득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3조 상품경영매장 임대자, 상품 전시회 주최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 라디오•TV 쇼핑 플랫폼 경영자가 경영장소 또는 플랫폼 입점을 신청하는 경영자의 주체 자격에 대한 심사•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위법혐의 행위에 대한 조치•조사에 협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4조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상품품질 불법행위의 피해 및 위험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키고 시장 퇴출 등 조치를 취하며 자각적으로 소비 분쟁을 해결한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그가 판매하는 상품이 판매금지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상품의 출처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공상행정관리 법 집행 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위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37조 이 방법에서 판매라 함은 판매자가 오프라인 매장, 인터넷, TV, 전화, 직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이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办法**  （2016年3月17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85号公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保护消费者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包括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市场监督管理部门，下同）依照法律、法规以及本办法的规定，对本行政区域内的流通领域商品质量进行监督管理，依法查处商品质量违法行为。  　　第三条　工商行政管理部门对流通领域商品质量实行以抽查为主要方式的监督检查制度，加强商品质量监督管理，督促经营者履行商品质量义务，保护消费者合法权益。  　　第四条 工商行政管理部门建立情况通报、信息共享、案件移送、监管联动的机制，加强执法协作，提高监管执法效能。  第五条 工商行政管理部门对商品质量违法行为实施行政处罚，应当依照公正、公开、及时的原则，坚持处罚与教育相结合，教育和督促经营者自觉履行法定义务。  第二章 经营者的商品质量义务  　　第六条 销售者应当建立健全进货检查验收、停止销售及退换货等商品质量管理制度，保障商品质量，按照法律、法规以及本办法的规定和对消费者的承诺履行商品质量义务，承担商品质量责任。  第七条　销售者应当严格执行进货检查验收制度，如实记录进货检查验收情况，并根据商品特点采取必要的保管措施，保持所销售商品的质量。    　　检查验收的内容主要包括：  　　（一）供货商的主体资格；  　　（二）商品合格证明和其他标识；  　　（三）对依照法律、法规规定实行生产许可证或者强制性产品认证制度的商品，查验其许可证、认证证书。  第八条　销售的商品或者其包装上的标识应当真实、准确、便于识别，不得误导消费者，并符合下列要求：  　　（一）有商品质量检验合格证明；  　　（二）有中文标明的商品名称、生产厂厂名和厂址；  　　（三）根据商品的特点和使用要求，需要标明的商品规格、等级、所含主要成分、含量以及其他需要事先让消费者知晓的内容；  　　（四）限期使用的商品应当在显著位置清晰标明生产日期和安全使用期或者失效日期；  　　（五）使用不当，容易造成商品本身损坏或者可能危及人身、财产安全的商品，应当有明确的警示标志或者中文警示说明；  　　（六）其他法律、法规及强制性标准规定应当标明的内容。  　　销售者销售的使用自己的商标、委托他人生产的商品，应当按照本条前款的规定进行标注。  　　根据商品的特点难以附加标识的裸装商品，可以不附加商品标识。  　　第九条 销售的进口商品应当符合下列要求：  　　（一）有中文标明的商品名称、产地以及进口商或者总经销者名称和地址；  　　（二）关系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或者对使用、维护有特殊要求的商品，应当附有中文说明书；  　　（三）限期使用的商品，应当有中文注明的失效日期；  （四）用进口散件组装或者分装的商品，商品或者包装上应当有中文注明的组装或者分装厂厂名、厂址。  　　第十条　销售者不得销售下列商品：  　　（一）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商品；  　　（二）不符合在商品或者其包装上标注采用的产品标准的商品，不符合以商品说明、实物样品等方式表明的质量状况的商品，不具备应当具备的使用性能的商品；  　　（三）国家明令淘汰并禁止销售的商品；  　　（四）伪造产地，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的商品；  　　（五）失效、变质的商品；  　　（六）篡改生产日期的商品。  第十一条 销售者销售商品，不得掺杂、掺假，不得以假充真、以次充好，不得以不合格商品冒充合格商品。  　　第十二条　销售的商品存在使用性能的瑕疵但不违反法律强制性规定的，销售者应当在商品、包装或者销售场所的显著位置清晰地标明“处理品”、“残次品”、“等外品”等，并以告示等方式如实说明商品的瑕疵或者实际质量状况。  第十三条　销售者不得购进或者销售无厂名、厂址等来源不明的商品。    　　第十四条 奖品、赠品等视同销售的商品，应当符合本办法第八条至第十三条规定。  　　第十五条 服务业的经营者不得将本办法第十条、第十一条规定禁止销售的商品用于经营性服务。  第十六条 销售者销售的商品不符合质量要求的，应当依照国家规定、当事人约定履行退货、更换、修理等义务。没有国家规定和当事人约定的，消费者可以自收到商品之日起七日内退货；七日后符合法定解除合同条件的，消费者可以及时退货，不符合法定解除合同条件的，可以要求经营者履行更换、修理等义务。  　　对依法经有关行政部门认定为不合格的商品，消费者要求退货的，销售者应当负责退货。  　　第十七条 销售者采用网络、电视、电话、邮购等方式销售商品的，消费者有权自收到商品之日起七日内退货。销售者应当依照法律规定承担无理由退货义务。  　　第十八条 销售者应当及时履行商品修理、重作、更换、退货、补足商品数量、退还货款和服务费用或者赔偿损失等义务，不得故意拖延或者无理拒绝。  第十九条 销售者发现其提供的商品存在缺陷，有危及人身、财产安全危险的，应当立即向工商行政管理部门报告和告知消费者，并采取停止销售、警示等措施。  第二十条 经营者对知道或者应当知道属于本办法第十条、第十一条规定禁止销售的商品，不得为其提供运输、保管、仓储等便利条件。  　　第二十一条 商品经营柜台出租者、商品展销会举办者、网络交易平台提供者、广播电视购物平台经营者，应当对申请进入其经营场所或者平台销售商品的经营者的主体资格履行审查登记义务。  　　商品经营柜台出租者、商品展销会举办者、网络交易平台提供者、广播电视购物平台经营者接到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通知或者公告后，应当要求并监督销售者停止销售相关商品，及时停止为相关商品提供入场经营或者平台服务，配合工商行政管理部门做好监督管理工作。  第三章 商品质量的监督检查  　　第二十二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按照法律、法规、本办法规定以及随机抽查实施方案的统一安排，随机抽查辖区内经营者，随机选派执法人员，对销售的商品以及经营性服务中使用的商品进行监督检查。  　　随机抽查的内容主要包括：进货检查验收制度执行情况，商品的质量检验合格证明、说明书以及生产厂厂名、厂址、警示标志等标识标注情况，其他应当向消费者提供的商品信息。  　　工商行政管理部门对消费者、有关组织、大众传播媒介反映的以及行政执法中发现有质量问题的商品，应当开展重点检查。  　　第二十三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按照流通领域商品质量抽查检验有关规定开展抽查检验工作，运用大数据分析等手段，科学确定线上线下抽查检验的重点，制定抽查检验计划和实施方案，不得随意抽查检验。  　　抽查检验应当依据法律、法规、强制性标准和其他有关规定，以及商品或者其包装上注明采用的产品标准或者商品说明、实物样品等方式表明的质量状况进行商品质量判定。  　　抽查检验结果应当及时向社会公布。  　　第二十四条 工商行政管理部门依据监督检查职权或者通过投诉、举报、其他机关移送、上级机关交办等途径发现、查处商品质量违法行为，并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行政处罚信息。  　　第二十五条 工商行政管理部门对涉嫌商品质量违法行为进行查处时，依法行使下列职权：  　　（一）对当事人涉嫌从事违法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二）向当事人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其他有关人员以及相关经营者调查、了解与涉嫌违法活动有关的情况；  　　（三）查阅、复制当事人有关的合同、发票、进货台账、销售台账、财务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对有根据认为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商品或者有其他严重质量问题的商品，以及直接用于销售该商品的原辅材料、包装物、专用工具，予以查封或者扣押；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职权。  第二十六条 对经抽查检验并依法认定的不合格商品，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责令销售者立即停止销售。对发现销售有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商品的，应当责令辖区内销售者立即停止销售同一商标的同一规格型号的商品，及时对该商品的供货者进行追查；供货者不在本辖区的，应当将相关线索通报供货者所在地工商行政管理部门。属于生产者责任引起的商品质量违法行为，应当将相关线索通报生产者所在地相关行政部门。  　　第二十七条 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市场监督检查情况，适时发布商品质量安全风险警示和消费提示。  第二十八条 工商行政管理部门在法定职权范围内，可以对经营者实施行政指导，综合运用建议、约谈、示范等方式引导经营者合法规范经营。    　　第二十九条　经营者对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进行的监督检查应当配合，不得拒绝。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条　销售者违反本办法第八条和第九条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第五十四条的规定予以处罚；销售者违反本办法第十条第（一）项至第（五）项、第十一条、第十二条和第十四条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三条的规定予以处罚；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条第（六）项、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十九条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第五十六条的规定予以处罚；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条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第六十一条的规定予以处罚；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五条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第六十二条的规定予以处罚；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九条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第五十六条的规定予以处罚。    第三十一条 对为销售者提供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商品的供货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第四十九条的规定，责令停止销售，没收违法销售的商品，并处违法销售商品（包括已售出和未售出的商品）货值金额等值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三十二条　销售者违反本办法第十三条规定的，责令改正，处违法所得三倍以下但不超过三万元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一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三条　商品经营柜台出租者、商品展销会举办者、网络交易平台提供者、广播电视购物平台经营者对申请进入其经营场所或者平台销售商品的经营者的主体资格未履行审查登记义务，或者拒绝协助工商行政管理部门对涉嫌违法行为采取措施、开展调查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四条　销售者主动消除或者减轻商品质量违法行为危害后果，采取退市等措施，自觉解决消费纠纷的，应当依法从轻或者减轻处罚。  销售者有充分证据证明其不知道所销售的商品为禁止销售的商品并如实说明进货来源的，可以依法从轻或者减轻处罚。  　　第三十五条 经营者对工商行政管理部门作出的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三十六条　工商行政管理执法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  第五章 附 录  　　第三十七条 本办法所称的销售包括销售者通过实体店、网络、电视、电话、邮购、直销等方式提供商品。  　　第三十八条 本办法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三十九条 本办法自2016年5月1日起施行。 |